

2021년 5월 3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과 장 이시혜(044-201-2111), 사무관 이주영(2121)
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(044-200-5480), 사무관 김준태(5487) / 제공 : 5월 28일(총 7매)

적정섭취 권장하고 안전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·해수부,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본격 시행

- 섭취 도움, 영양 보충 등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개발 촉진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5월 31일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(이하, 우수식품) 지정제도 시행
 -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우수식품 지정 대상 품목 고시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
- ◆ ‘고령자의 섭취, 영양 보충, 소화·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, 형태,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·가공하고,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’을 우수식품으로 지정
 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 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,
 - 고령친화식품 KS의 품질기준*, 물성·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, 안전한 포장형태 등의 요건 충족 필요
 - * (물성) 경도·점도, (영양성분) 단백질 등 9개 성분 중 1개 이상 기준치 충족 등
- ◆ 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도 병행할 예정
 - 올해 지정심사 계획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오는 6월 1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, 자세한 내용은 식품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료 제공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와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, 이하 해수부)는 5월 31일부터 ‘고령친화우수식품(이하 우수식품) 지정제도’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앞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」을 개정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,

○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(이하, 진흥원)을 고령친화식품지원 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.

□ 생산업체의 신청과 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‘고령자의 섭취, 영양 보충, 소화·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, 형태,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·가공하고,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’을 우수 식품으로 지정한다.

○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,

○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에서 정한 품질기준*, 물성·영양 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, 삼김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,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,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* (물성) 경도·점도, (영양성분) 단백질 등 9개 성분 중 1개 이상 기준치 충족 등

□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지정심사 및 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(www.foodpolis.kr)의 ‘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’ 란에서 우수 식품 지정 관리지침, 신청자 매뉴얼 및 향후 사업공고 등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한편, 진흥원은 오는 6월 10일에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“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여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만큼,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히며,
-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참고 1

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기준

심사항목		세부 평가 내용
기본요건	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	○ 평가를 신청한 제품 실물이 시험성적서 및 제품 설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가?
	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	○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사용성 평가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는가? ○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테스트하였는가? * 시설 납품용은 편의성 및 조작성 관련 항목 평가 제외
	기본 품질기준	○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기준에 적합한가? - KS의 단계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에도 1~3단계 부여. * 고령친화식품 KS 미인증 제품은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, KS 인증 제품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*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은 제품 1,000 kcal 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
품질·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	고령자 배려를 위한 제조공정	○ 고령자의 저작, 연하, 소화흡수 등의 능력을 배려하여 경도, 점도, 부 착성, 영양, 소화성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제조공정이 있고, 그 제조공정을 적용한 결과가 고령자 배려에 적절한가?
	섭취 안전성	○ 제품의 목적 및 섭취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자가 삼키기 용이한 크기로 제조되었는가? ○ (반)유동식의 경우, 목넘김 시 흡착 위험이 없는가? ○ 고령자인 소비자를 고려하여 제품의 이물(경질, 연질) 관리를 실시하였는가?
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	섭취 전 취급 방법	○ 전처리, 조리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편리를 고려하였는가?
	포장 형태	○ 사용자가 쉽게 포장을 개봉할 수 있는가? ○ 포장의 취급 또는 개봉과정에서 신체의 손상 위험이 없는가? ○ 취식용 도구가 포장에 포함된 경우,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?
	제품 표시사항	○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글자크기 및 활자체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있는가?(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) ○ 표시를 통해 연하 용이, 영양 강화 등 제품의 용도를 쉽게 설명하였는가? ○ 조리 또는 섭취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가?(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) ○ 연령대별 계량방법(영양섭취 기준) 안내를 이해하기 쉬운가?(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)

참고 2

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품질기준

구분	기준		
	1단계(치아 섭취)	2단계(잇몸 섭취)	3단계(혀로 섭취)
성상	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,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.		
경도 ^a (N/m^2)	500 000 이하 ~ 50 000 초과	50 000 이하 ~ 20 000 초과	20 000 이하
점도 ^{b,c} ($mPa \cdot s$)	-	-	1 500 이상
영양 성분 ^{d,f}	단백질	6 g/100 g 이상	
	비타민 A	75 μg RAE/100 g 이상	
	비타민 C	10 mg/100 g 이상	
	비타민 D	1.5 μg /100 g 이상	
	리보플라빈	0.15 mg/100 g 이상	
	나이아신	1.6 mg NE/100 g 이상	
	칼슘	80 mg/100 g 이상	
	칼륨	0.35 g/100 g 이상	
	식이섬유	2.5 g/100 g 이상	

^a 단일 원재료가 아닌 경우, 경도가 가장 높은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 단,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 섭취하는 정제, 캡슐, 환, 과립, 액상, 분말 형태의 제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^b 점도 측정이 불가능한 제품(예: 젤리, 두부 등), 경관급식 제품 및 국·찌개 등의 국물의 경우,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LV형 점도계로 측정 가능한 상한값을 벗어나는 제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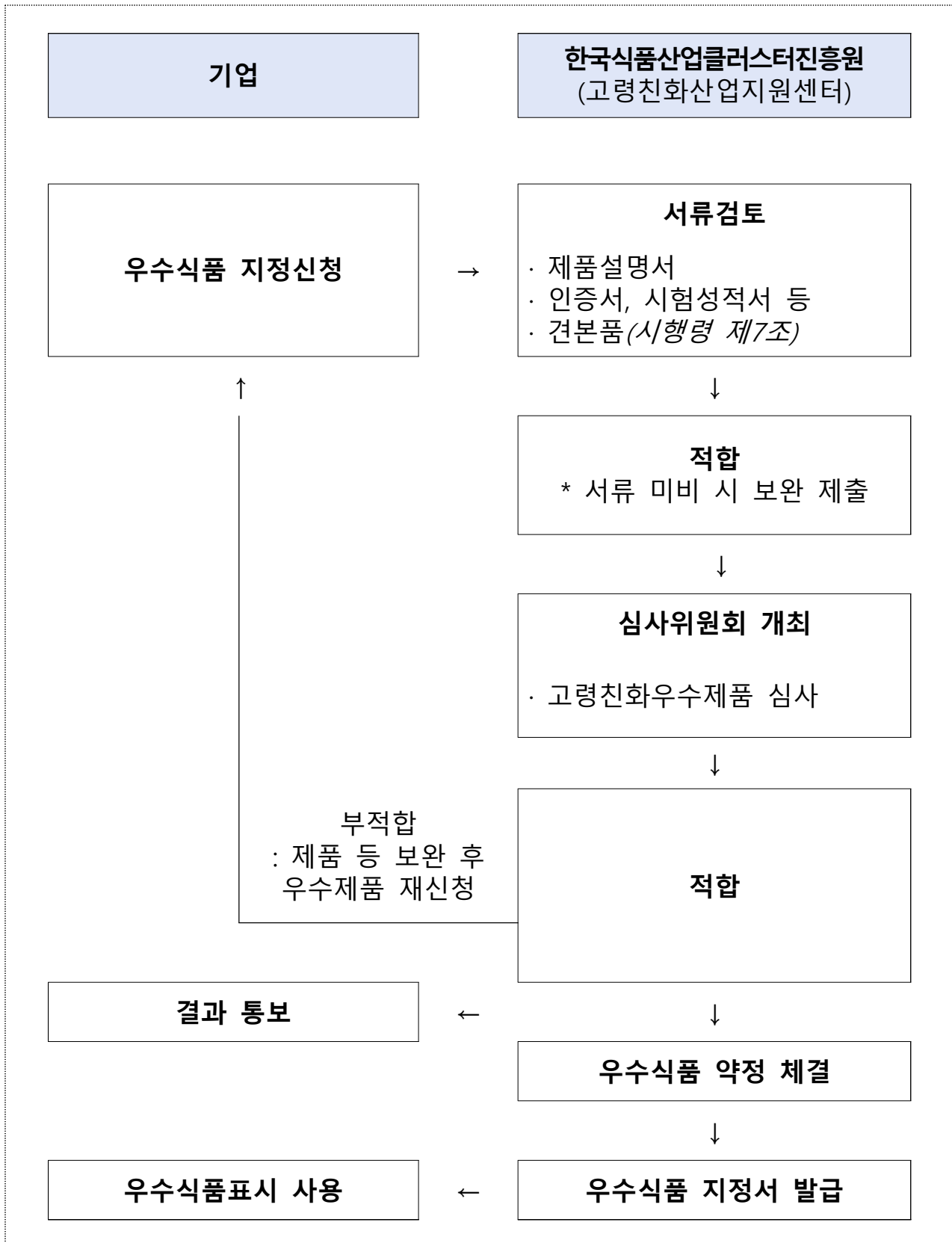
^c 각주^a의 단서 중 정제, 캡슐, 환, 과립 및 분말 형태의 제품의 경우에는 이와 혼합 또는 함께 섭취하는 용도의 유동성 식품에 대하여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점도조절제, 유동성 식품 등을 제품에 혼합하거나 별도로 동봉하여야 하고, 제품에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섭취시의 형태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.

^d 영양성분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단, 1회 섭취 열량이 500 Kcal 이상인 제품(단, 특수용도식품 및 즉석섭취·편의식품류에 한함) 및 각주^a에서 경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은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.

^f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참고 3

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절차



참고 4

고령친화우수제품 표시

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[별표 1]

